땅끝 해남소식

2023년 1월 2일(536호) HAENAM NEWS

◆ 군정목표 ◆
힘찬도약,
살맛나는 으뜸해남
◇ 군정방침 ◇
소통공감 윤리경영
지속가능 미래농업
서남해안 관광중심
상생활력 균형발전
사람중심 나눔복지

발행인: 해남군수 발행처: 기획실 주소: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
대표전화 061)530-5321팩스 530-5574 홈페이지 http://www.haenam.go.kr
◎ 본지에 실린 고시·조례·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◎

조례

⊙ 해남군 조례 제3208호 ---------- 2

규칙

⊙ 해남군 규칙 제1362호 ---------- 7

조 례

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(2022. 12. 14.)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월 1일

해남군수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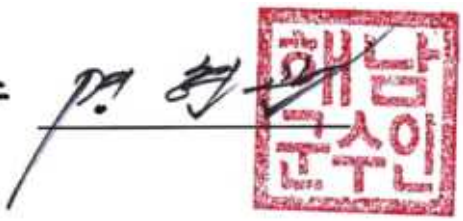

해남군 조례 제3208호

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총수는877명이며”를 “총수는 880명이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정원책정기준은「별표 1」”을 “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30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----------. ----------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877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 1.·2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총수는 880명이며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「별표 1」과 같다.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「별표 2」와 같다.	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----------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----------.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「별표 3」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----------. ----------

<별지>

[별표 3] (현 행)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877					
정무직 계	1					
군수	1	1				
일반직 계	831					
4급	2	1		1		
4~5급	3	2				1
5급	39	16	3	2	5	13
6급 이하 소계	786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				
별정직 계	0					
6급상당	0					
연구직 계	11	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1					
지도직 계	34	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1					

[별표 3] (개 정 안)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880					
정무직 계	1					
군수	1	1				
일반직 계	834					
4급	2	1		1		
4~5급	3	2				1
5급	39	16	3	2	5	13
6급 이하 소계	789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				
별정직 계	0					
6급상당	0					
연구직 계	11	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1					
지도직 계	34	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1					

규 칙

제16회 해남군 조례·규칙 심의회(2022. 11. 24.)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월 1일

해남군수 [illegible] 해남군수인

해남군 규칙 제1362호

붙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정원규정」제30조제2항 및 3항과「해남군 지방공무원 조례」제4조 및 5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「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해남군(이하“군””을 “해남군(이하 “군”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정원규정」제30조제2항 및 3항과「해남군 지방공무원 조례」제4조 및 5조에 따라 해남군 본청,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규칙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과「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----------.
제2조(직급·직렬별정원) 해남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별표 1과 같다.	제2조(직급·직렬별정원) 해남군(이하 “군”----------.